

■ 주세법 시행령 [별표 4]

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

특수면세품목의 용도	특수면세품목의 용도
1. 화약(정부용으로 한정한다) 가. 뇌산수은(뇌홍) 나. 폭분 다. 알코올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라. 그 밖의 화약	25. 톨크류
2. 연초발효용(수출용 연초로 한정한다)	26. 소독용 알코올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코올	27. 피마자유
4. 알칼로이드 및 그 염류	28. 포도당
5. 에테르 가. 에틸황산 및 그 염류 나. 폴리올 또는 탄산에틸메틸	29. 에틸렌 및 그 유도체
6. 에스테르류	30. 수산화칼륨
7. 광유(살바르산)	31. 콜로디온
8. 콜타르 분류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32. 고무화촉진제
9. 오배자 제제	33. 피롤
10. 장뇌	34. 셀룰로이드
11. 초산	35. 제라니올
12. 장기제제	36. 래커 및 래커신나
13. 다아스테제류	37. 바니시
14. 디기탈리스 제제	38. 알코올습초화섬유소
15. 차아황산나트륨 염류	39. 인쇄 및 사진용 감광유제
16. 박하유	40. 세로이딘
17. 비타민류	41. 대두유
18. 사포닌질제제	42. 초산섬유소(인조견사 및 초산섬유소 인조섬유)
19. 브롬 장뇌	43. 비닐계 중합물
20. 실버프로틴	44. 알긴산나트륨(알긴산소다)
21. 헥사메틸렌테트라민	45. 페닐 초산수은
22. 포수클로랄	46. 야자유 · 지방산 · 모노글리세라이드 · 에틸에스테르
23. 라놀린	47. 수출용 물품
24. 용뇌	48. 인혈액분획제제
	49. 식품기계기구 살균소독용 물품
	50. 식품세척용 물품
	51. 향료용 물품
	5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의약품